

2015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연차/단계실적 · 계획서 제출안내

2015. .

보 건 복 지 부
국 립 암 센 터
암정복추진기획단

1. 추진목적

- 계속과제의 연차/단계실적·계획서를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
(연구비는 2014년도 수준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)
 - 연차평가: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전년도 실적 및 차 년도 계획을 평가
 - 단계평가: 연구기간이 단계로 구성된 계속과제의 각 단계 연구종료 전에 전단계의 실적 및 다음단계 계획을 평가

2. 대상과제

구 분	연구시작일	선정년도	비고
계속과제	2015.05.01.	2009, 2011, 2012, 2013, 2014	<p>* 단계평가 대상과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9년 선정과제 중 연구기간이 단계로 구성된 과제

- ☞ 2015년도 연차/단계실적·계획서 제출대상 과제: 붙임 참조

3. 연구수행 시 준수사항

1)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준수

- 인간과 인체유래물, 배아나 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·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함)을 준수하여야 함
 - ☞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던 기존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도 적용
 -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(법 제3조)
 -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(이하 “기관위원회”라 함)를 설치하여야 함(법 제10조)
 - ☞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소속된 교육·연구기관, 병원 등 포함
 -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전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(법 제15~16조, 제36~37조)

- 잔여배아 연구, 체세포복제배아 연구, 배아줄기세포주 연구, 유전자치료 및 검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연구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(예: 배아연구기관등록증, 배아연구계획승인서, 유전자검사기관·유전자연구기관신고필증 등)
- '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', '기관생명윤리위원회'에서 정하는 사항 및 연구의 종류
 - 대상·범위를 준수하여야 함

2) 임상연구정보 CRIS 등록

- 등록대상: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는 코호트 등의 관찰연구 및 중재연구(임상시험) 등 모든 종류의 임상연구
-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 성과정보의 내실화 및 국내 임상연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된 임상연구정보서비스 (CRIS, <http://cris.nih.go.kr>)에 지원과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
- 성과보고 시 임상연구 성과는 CRIS 등록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

임상연구정보서비스(CRIS,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)

-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에 대한 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서,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, 운영하고 있음
- 2010년 5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(ICTRP)에 국가대표등록시스템 (Primary Registry)으로 가입함에 따라,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본인의 연구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, 국제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등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

* 정보등록 시 유의사항

- ❶ 등록시점: 첫 피험자 모집 전에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임상 시험 및 임상연구도 등록이 가능
- ❷ 등록권한: 회원가입 후, 등록권한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 가능

4. 평가방법

1) 연차평가

- 평가절차: 서면평가 \Rightarrow 구두발표평가 \Rightarrow 종합평가

- 소형 단독과제의 연차평가는 서면평가만 실시함. 단, 서면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, 구두발표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
○ 평가기준

구 분	서면/구두발표 평가기준
기 수행 연구실적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추진실적 - 연구수행 결과 관련 실적
차 년도 연구계획 및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- 차 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- 편성된 연구비의 적정성 -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가능성

○ 평가점수 반영

점 수	점수 \geq 70점	60점 \leq 점수<70점	점수<60점
지원여부	계속지원	조기중단	중단(연구책임자 제재)

* '중단'으로 분류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동 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함

2) 단계평가

- 평가절차: 서면평가 \Rightarrow 구두발표평가 \Rightarrow 종합평가

○ 평가기준

프로그램	서면/구두발표 평가기준	프로그램	서면/구두발표 평가기준
다기관공동 암임상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의 목표달성을 및 우수성 - 연구단계의 진전여부 - 근거확립 및 표준지침 마련여부 - 차기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- 연구결과의 예상되는 파급효과 - 차 단계 진입 허용 여부(가/부) 	암전문 연구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의 목표달성을 및 우수성 - 연구단계의 진전여부 - 임상적용 등 실용화 가능성 - 차기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- 연구결과의 예상되는 파급효과 - 차 단계 진입 허용 여부(가/부)
이행성암연구 특별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의 목표달성을 및 우수성 - 연구단계의 진전여부 - 임상적용 등 실용화 가능성 - 차기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- 연구결과의 예상되는 파급효과 - 차 단계 진입 허용 여부(가/부) 	지역암센터 연구사업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의 목표달성을 및 우수성 - 연구단계의 진전 여부 - 지역암센터 역할 증대 기여도 - 차기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- 연구결과의 예상되는 파급효과 - 차 단계 진입 허용 여부(가/부)

○ 평가점수 반영

- 평가항목 중 '차 단계 진입 허용 여부'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구두발표평가에서 각각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,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다음단계 진입이 가능함

5. 제출방법 및 향후 추진일정

1) 제출방법

- 계속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(<http://rnd.ncc.re.kr>)에서 연차 또는 단계실적·계획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

- ◉ 연차실적·계획서(연차평가용)

- [서식-C1] 세부과제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

- [서식-C2] 세부과제를 구성하는 경우

- ◉ 단계실적·계획서(단계평가용)

- [서식-C3] 연구기간이 단계로 구성된 과제 중 다음 단계 진입 예정인 과제

- 작성한 연차/단계실적·계획서를 접수 일정에 맞추어 전산등록 함

- ◉ 과제평가 및 관리는 전산입력 자료를 기초로 하므로, 제출하는 계획서에 근거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함

- 주관연구기관 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전산 입력한 연차/단계실적·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기관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제출함

- ◉ 기관별 과제접수 공문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함

2) 숙지사항

○ 연구비 산정

- 신청 프로그램의 지원규모와 [별첨2]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연구비를 산정함.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, 본 지침에 위배되는 비용은 불인정함

○ 연구성과 작성

- 연차/단계실적·계획서에 기재하는 연구 성과는 평가 시 목표 달성을 판단하는데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므로, 반드시 지원과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암정복 추진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의 성과임을 명기한 경우만 기재하여야 함

3) 제출서류

- 주관연구기관장의 연차/단계실적·계획서 제출 공문(일괄 제출)

-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차/단계실적·계획서 전산파일

※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(<http://rnd.ncc.re.kr>)에 전산 등록하여 제출

4) 제출기한

구 분		제출기한
과제접수	연구책임자	3. 2.(월) ~ 3. 5.(목), 17:00
	기관담당자	3. 2.(월) ~ 3. 6.(금), 17:00

-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(소속기관)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완료되므로,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접수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함

5) 향후 추진일정

구 분	추진일정
과제접수	3. 2. ~ 3. 6.
서면평가	3.11. ~ 3.25.
구두발표평가	4.20. ~ 4.24.
최종선정결과 통보	4월
협약 및 연구개시	5월

- 구두발표 평가 시 암정복추진기획단과 사전협의 없이 과제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,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
-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

6. 연구사업의 운영 및 관리

1)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

-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연도 연구과제 수행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각 세부/위탁과제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집행증빙서류 사본을 취합하여 전문 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-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연구비카드 시스템(<http://ncc.bccard.com>) 출력분만 인정하며, 일괄통장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자 산출이 어려운 경우 현물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금액의 0.1%로 계상하여야 함

-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정산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각 세부/위탁 과제별 집행잔액, 미사용 발생이자 및 연구비 기준 외 집행액 등 정산잔액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
- ☞ 반납금액은 정부출연금에 한하며, 정부출연금 지분 반납액이 10,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소유로 함

위탁정산 회계수수료는 연구과제에 포함하여 계상하지 아니하며,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관리·집행함

2) 연구성과 관리

가. 연구성과 보고

-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3년까지 연구와 관련하여 성과가 발생할 경우, 그 결과를 즉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 (<http://rnd.ncc.re.kr>)에 등록하여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
 - 정부정책기여, 진료지침개발, 치료기술개발, 제품개발, 기술이전, 특허, 논문 등의 실적과 증빙자료 및 이의 활용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
- 전문기관은 연구성과 관리를 위하여 연구종료 후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연구종료 후 연구성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,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

나. 연구결과의 발표 및 게재

-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, 홍보 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, 전문기관과 필히 사전 협의하여야 함
- 특히,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출원(등록)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
 - 국문: '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지원으로 이루어 진 것임
(전문기관에서 부여한 과제번호: 예시 0920050)'
 - 영문: '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National R&D Program for Cancer Control, Ministry of Health & Welfare, Republic of Korea
(전문기관에서 부여한 과제번호: 예시 0920050)'

연구성과는 지원과제와 관련된 것으로,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만 인정함

다. 기술료 납부

-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실시권의 내용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. 단,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음
- 전문기관 납부비율: 영리법인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~40%

영리법인 유형	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비율	비고
중소기업	정부출연금의 10%	* 기술료 납부액
중견기업	정부출연금의 30%	: 각 세부연구기관별로 지원된 정부 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
대기업	정부출연금의 40%	

* 비영리법인인 경우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면제

본 안내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기타 연구사업의 운영은 「2014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계획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추진함

문의처

- 암정복추진기획단 사무국: TEL) 031-920-1081~3, FAX) 031-920-1089
- 홈페이지: <http://rnd.ncc.re.kr>, <http://ncc.ncc.re.kr>, <http://www.ncc.re.kr>
- 제출처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
 국립암센터 내 암정복추진기획단 사무국(대외연구기획지원팀)
 (우편번호: 410-769)

별첨1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

연구기관	책임급	선임급	연구원급	연구원보급
대 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교수 이상 - 박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임강사 이상 -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-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부설 연구기관 6년 이상 근무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3생 이하
국/공립 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소유 민간의료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사,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취득 후 12년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사,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취득 후 7년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사,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취득 후 2년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사,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 및 비의료인 연구자
국/공립 연구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직 과장 또는 5년 이상 - 기술직 4급 이상 - 정부출연연구소의 책임급 연구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관 - 기술직 5급 - 정부출연연구소의 선임급 연구원 -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/공립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사 - 기술직 6급 이하 - 정부출연연구소의 석사급 연구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출연연구소의 학사급 연구원
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12년 이상 -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5년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6년 이상 -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1년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사학위 이하 소지자

별첨2

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

비 목	세 목	내 용						
직접비	인건비	<p>① 사용용도</p> <p>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·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</p> <p>② 계상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¹⁾을 해당과제 참여율²⁾에 따라 계상함 <p>1) 급여총액 :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</p> <p>2) 해당과제 참여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내 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은 기관</td> <td>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 비율</td> </tr> <tr> <td>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</td> <td>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%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 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,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 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없음 *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%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함. 단, 해당 미지급 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함 ○ 대학교수,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,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%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함(미지급 인건비 계상) 	구 분	내 용	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은 기관	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 비율	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	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
구 분	내 용							
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은 기관	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 비율							
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	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							

비 목	세 목	내 용								
직접비	인건비	<p><내부인건비 지급 가능 대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•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•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」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•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(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) •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(고용계약서 등)를 제출한 연구인력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<p>③ 계상방법</p> <p>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액(월평균액)×참여율×실제 참여기간(월) ※ 인건비 현물 산정기준: 수행기관 급여기준 x 참여율</p> <p>참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승인사항: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								
직접비	학생 인건비	<p>[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해당]</p> <p>① 사용용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(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(리서치 펠로우)을 포함)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<p>② 계상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(man-month)을 기준으로 계상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학사과정</th> <th>석사과정</th> <th>박사과정</th> <th>박사후연구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000,000원/월</td> <td>1,800,000원/월</td> <td>2,500,000원/월</td> <td>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학사과정	석사과정	박사과정	박사후연구원	1,000,000원/월	1,800,000원/월	2,500,000원/월	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
학사과정	석사과정	박사과정	박사후연구원							
1,000,000원/월	1,800,000원/월	2,500,000원/월	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							

비 목	세 목	내 용
		<p>[3] 계상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.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참고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율의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하여야 함 •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·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○ 참여연구원 변경 :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함 ○ 사전승인사항 : 학생인건비를 당초 계획서 대비 5%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☞ 불인정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인건비 •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• 연구개발계획서에 충원으로 명시된 인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, 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비 시 • 인건비 지급 시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,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• 학생인건비를 전문기관 사전승인 없이 증액 또는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
직접비	연구장비 재료비	<p>[1] 사용용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시설·장비: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(해당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), 연구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·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○ 재료비·전산처리비: 시약·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·관리비 ○ 시작품 제작비: 시제품·시작품·시험설비 제작경비 ※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에 계상이 가능하며, 자체제작하는 경우 인건비, 재료비등에 반영

비 목	세 목	내 용
	<p>② 계상기준</p> <p>실소요 경비를 계상함</p> <p>참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승인사항 :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· 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·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과제종료 2개월 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함 ○ 연구시설 · 장비 도입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 운영 - 예산집행시점에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의 고가연구장비 심사평가 <p>☞ 불인정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재 구입비(해당 연구기간 종료 직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) 단,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(연차실적 · 계획서,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 명기) •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,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•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(프린터, 복사기, 개인용 컴퓨터 등 OA 기기) •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	
직접비	<p>연구 활동비</p> <p>① 사용용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○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, 복사, 인화, 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○ 전문가 활용비, 국내외 교육훈련비, 도서 등 문현구입비, 회의장 사용료, 세미나 개최비, 학회 · 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기술도입비 등 ○ 시험 · 분석 · 검사, 임상시험, 기술정보수집,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 개발서비스 활용비 ○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(세부과제가 있는 주관과제에만 계상) <p>② 계상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,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함 	

비 목	세 목	내 용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, 국·공립 대학(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) 및 국·공립 연구기관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- 세부과제 조정·관리비는 회의식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30,000원 이내로 계상함 <p>○ 비임상·임상시험비는 시험 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비용으로,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 문의하여야 함</p> <p>● 불인정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참여인력의 여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•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, 차량 임차비, 유류비 •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 등 •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, 청소비, 차량보험료, 경상피복비 등 • 종신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, 참가비 •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
직접비	연구과제 추진비	<p>① 사용용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○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비용 등 ○ 회의비(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, 전문가활용비 제외) ○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(야근 및 특근식대) <p>② 계상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,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함 -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, 국·공립 대학(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) 및 국·공립 연구기관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- 회의식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30,000원 이내로 계상함

비 목	세 목	내 용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부품의 구입·유지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비용임 <p>❶ 불인정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 •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한 금액
직접비	연구수당	<p>① 사용용도</p> <p>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•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</p> <p>② 계상기준</p> <p>인건비(인건비로 계상된 현물·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포함하되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)의 20% 범위에서 계상함</p> <p>참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대비 증액이 불가하며, 인건비를 감액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도 감액하여야 함 ○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<p>❶ 불인정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획서 당초 예산 대비 초과 집행분 •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•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•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,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
직접비	위탁연구 개발비	<p>① 사용용도</p> <p>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</p>

비 목	세 목	내 용
	[2] 계상기준	<p>직접비, 간접비로 계상하되,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%를 초과할 수 없음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참고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승인사항 : 당초 계획대비 20%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
간접비	[1] 사용용도	<p>① 인력지원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인력 인건비 :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 인력,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(한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둑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,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) ○ 연구개발능률성과급 : 연구기관(주관/협동/공동/위탁연구기관)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 성과급 <p>② 연구지원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 공통지원경비 :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○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: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○ 연구실 안전관리비 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하는 경비 ○ 연구보안관리비 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, 보안 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○ 연구윤리활동비 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 · 운영,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, 연구부 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○ 연구개발준비금 :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(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

비 목	세 목	내 용
		<p>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), 연구 연가,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(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),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: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(Web-DB, e-Journal) 구입비, 실험실 운영 지원비, 학술대회 지원비,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(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) ○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(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) <p>③ 성과활용지원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문화활동비 :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, 강연, 체험활동,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○ 지식재산권 출원 · 등록비 :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· 등록 · 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,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· 운영, 연구노트 교육 · 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○ 기술창업 출연 · 출자금 :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, 학교기업, 실험실공장, 연구소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<p>② 계상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 :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)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함 ○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: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)의 17% 범위에서 계상함 ○ 영리법인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포함) :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)의 5%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함. 단,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」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경우 10%까지 계상할 수 있음 ○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% 범위에서 계상함

비 목	세 목	내 용
		<p>○ 기술창업 출연·출자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% 범위에서 계상하고, 설립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</p> <p>● 불인정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

비고

1. 대학, 특정연구기관(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함) 및 학연협동 석사·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됨
2.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함
3.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